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-633호

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28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복합기와 비데가 대기전력저감대상 품목에서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이관 예정 →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대상품목 조정 필요

2. 주요 내용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2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 제품 제4호(복합기), 제17호(비데) 삭제

3. 의견제출

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

- 주소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

- 전화 : 044-203-5146, 팩스 : 044-203-4759

- 이메일 : 2825lwj@korea.kr

붙임 : 신규 조문 대비표 1부

현행	개정안	비고
제14조(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) ① 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 제품(이하 "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1. 18.> 1. ~ 3 (생략) 4. <u>복합기</u> 5. ~ 16. (생략) 17. <u>비데</u> 18. ~ 19. (생략)	제14조(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) ① 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 제품(이하 "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1. 18.> 1. ~ 3 (현행과 동일) 4. <u>삭제 <2024. 00. 00.></u> 5. ~ 16. (현행과 동일) 17. <u>삭제 <2024. 00. 00.></u> 18. ~ 19. (현행과 동일)	○복합기 삭제 ○비데 삭제
부 칙 <제00호, 2024. 00. 00.> <신 설>	부 칙 <제00호, 2024. 00. 00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14조제1항제17호 및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	○시행일 명시
[별표 2]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(제13조제1항 관련) 1. ~ 3 (생략) 4. <u>복합기</u> 5. ~ 16. (생략) 17. <u>비데</u> 18. ~ 24. (생략)	[별표 2]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(제13조제1항 관련) 1. ~ 3 (현행과 동일) 4. <u>삭제 <2024. 00. 00.></u> 5. ~ 16. (현행과 동일) 17. <u>삭제 <2024. 00. 00.></u> 18. ~ 24. (현행과 동일)	○복합기 삭제 ○비데 삭제